

	학부(학과)장, 학생지도교수에 관한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 4. 1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학부(학과)장, 학생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 및 임기) ① 학부(학과)장, 학생지도교수는 해당학과의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부(학과)장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.

제3조(임면) ① 학부(학과)장은 총장이 임면한다.

② 학생지도교수는 학부(학과)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
③ 총장은 학생지도교수가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.

제4조(학생지도교수 운영방법) ① 학생지도교수는 전 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생지도교수는 배정받은 학생에 대하여 상담, 지도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.

제5조(임무) ① 학부(학과)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학사관리
2. 특수신분교수, 강사, 학생지도교수 및 교육보조원 추천
3. 우수신입생 확보, 학생유치 활동 및 지원
4. 재산(집기, 비품)관리
5.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

② 학생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학생 상담 및 지도
2. 휴, 복학 및 자퇴 상담
3. 학생 이수 및 수강신청
4. 취업, 진로, 졸업생 추수지도 등
5.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